정령 제4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내각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72호)의 시행에 따라, 및 관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6년 정령 제29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3 (표제를 포함한다) 중 “제8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제8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호 중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또는 58조의 13 제1항”을 “제8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제23조 제1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혹은 제3항 전단, 제47조 제1항 전단, 제57조 제1항 전단 또는 제58조의 13 제1항 전단”으로 개정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3조의 4 - 법 제8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 또는 그 임원(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날 전 1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혹은 그 사용인(전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을 말하며, 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날 전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다른 법인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의 방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다른 법인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중 “제16조의 3 제4호”를 “제16조의 5 제4호”로 개정한다.

제14조의 2를 제10조의 3으로 하고, 제10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39 조 제4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0조의 2 - 제3조의 4의 규정은 법 제39조 제4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 4 중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통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연쇄판매업자”로 하고,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은 “법 제3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으로 개정한다.

제13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4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3조의 2 - 제3조의 4의 규정은 법 제4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 4 중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의 4 중 “동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은 “법 제47조 제1항 전단”으로 개정한다. 제16조의 4를 제16조의 6으로 하고, 제16조의 3을 제16조의 5로 하며,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3으로 하고, 동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58조의 13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6 조의 4 - 제3조의 4의 규정은 법 제58조의 13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 4 중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구매업자”로,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은 “법 제58조의 13 제1항 전단”으로 개정한다.

제16조의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5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6조의 2 - 제3조의 4의 규정은 법 제5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 4 중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사업자”는 “업무제공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1항 전단, 법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 제1항 전단”은 “법 제57조 제1항 전단”으로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의 표 판매업자의 항 제4호 중 “방문판매” 아래에 “, 통신판매”를 추가하고, 동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육. 해당 판매업자가 특정 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항의 표 역무제공사업자의 항 제4호 중 “반문판매” 아래에 “, 통신판매”를 추가하고, 동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육. 해당 역무제공사업자가 특정 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2항 중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6항”으로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 제5항”을 “동조 제6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하며, 동조 제7항 중 “제3항까지(동제 제5항”을 “제4항까지(동조 제6항”으로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 제5항”을 “동조 제6항”으로 개정하며, 동항 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3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2조 –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1986년 정령 제34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 표제를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의 정령으로 정하는 권리)”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나””로 개정하고, “(이하, “시설이용권”이라고 한다)”을 삭제하며, 동항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사. 인간의 피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고, 체형을 정돈하거나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시술(의학적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

제1조 제2항을 동조로 한다.​

제2조 중 “및 동법”을 “, 동법”으로 개정하고, “증권금융회사” 아래에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5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자 및 동조 제8항에 규정하는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추가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4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 – 법 제4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일.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가액 또는 해당 가액의 미래 변동 전망

이. 물품의 반환 또는 특정 권리 대신에 급부되는 물품의 가액 또는 해당 가액의 미래 변동 전망

삼. 물품 또는 특정 권리의 매입 가격 또는 그 산정 방법

사. 예탁 등 거래계약에 의해 공여되는 재산상의 이익 금액(공여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금전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

오.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 관계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특정 권리(해당 물품 또는 특정 권리를 예탁 등 거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해당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밀접 관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해당 특정 권리의 분량

육. 금리, 통화의 가격 또는 상품 시장(상품선물거래법(1950년 법률 제239호) 제2조 제9항에 규정하는 상품 시장을 말한다)에서의 시세 동향, 그 외 예탁 등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할지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세의 변화에 관한 사항

칠. 예탁 등 거래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법 제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제4조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은 사용인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일. 사업소의 업무를 통괄하는 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 법 제1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예탁 등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통괄하는 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전호에 열거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의 표제를 “(권한 위임)”으로 개정하고, 동조 중 “제13조의 2”를 “제31조 제1항”으로, “제11조의 2 및 제13조”를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11조(법 제1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8 조 및 제30조”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2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 중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예탁 등 거래업자 등 또는 밀접 관계자가 행하는 그 예탁 등 거래에 관한 업무 또는 예탁 등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물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소비자청 장관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법 제21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5조 법 제21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예탁 등 거래업자 또는 그 임원(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날 전 1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혹은 그 사용인(전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을 말하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날 전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다른 법인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다른 법인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3조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의 재판절차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정령 제37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호 중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을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제3조 중 “제92조”를 “제93조”로 개정한다.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4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시행령(1958년 정령 제3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제48호를 제49호로 하고, 제28호에서 제47호까지를 1호씩 뒤로 미루며, 제27호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이십팔.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 제33조 제1호(동법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규정한다 죄

(신탁업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

제5조 다음에 열거하는 정령의 규정 중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을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일. 신탁업법 시행령(2004년 정령 제427호) 제4조 제12호

이. 공익통보자 보호법 별표 제8호의 법률을 정하는 정령(2005년 정령 제146호) 제282호

삼. 소비자계약법 시행령(2007년 정령 제177호) 제1조 제25호

사. 소비자청 조직령(2009년 정령 제215호) 제11조 제7호

오. 형사소송법 제350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죄를 정하는 정령(2018년 정령 제51호) 제29호

(해적 다발 해역에서의 일본선박 경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6조 해적 다발 해역에서의 일본선박 경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년 정령 제3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8호를 제49호로 하고, 제28호부터 제47호까지 1호씩 뒤로 미루고, 제27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이십팔. 예탁 등 거래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2호) 제33조 제1호(동법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규정하는 죄

부칙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소비자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중앙금고 및 특정 농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의한 신용사업의 재편 및 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

2 농림중앙금고 및 특정 농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의한 신용사업의 재편 및 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1997년 정령 제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 제1항 제48호 중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한다.

이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그 회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특정 관계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타 관계 정령의 규정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